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 3. 30.

제안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수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2. 수정주요골자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2조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원안·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기능) "생략"	제2조(기능) "원안과 같음"
1.~2. "생략"	1.~2. "원안과 같음"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생략"	4.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6. 3. 30.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7회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96.3.30.) 상정 질의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가. 제출이유

차량의 폭증과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으로 함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간사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5.3.14. 조례 제28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구성과 사무직원유현 행정기구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

제출일자 : 1996. 3. 20.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차량의 폭증과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 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으로 함(안 제3조)

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간사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함(안 제6조제2항)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제1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과장
  2. 도시정비과장
  3. 교통행정과장
  4. 교통지도과장
  5. 건설관리과장
  6. 토목과장
  7.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 제6조제2항중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생략)</p> <p>②(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예산과장</li> <li>2. 지역교통과장</li> <li>3. 도시정비과장</li> <li>4. 건설관리과장</li> <li>5. 토목과장</li> <li>6. 마포경찰서 교통과장</li> <li>7.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li> </ol>	<p>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예산과장</li> <li>2. 교통행정과장</li> <li>3. 교통지도과장</li> <li>4. 도시정비과장</li> <li>5. 건설관리과장</li> <li>6. 토목과장</li> <li>7. 마포경찰서 교통과장</li> <li>8.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li> </ol>
<p>제6조(간사와 서기) ①(생략)</p> <p>②간사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칭하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p>	<p>제6조(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p> <p>②.....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p>

民防衛教育場 新設

관내 민방위대원 전용교육장 미확보로 타구 소재 민방위교육장(동작구 보라매 공원내)이용에 따른 원거리 소재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과다한 소요시간(1시간 이상)

으로 야기되는 고질적 민원해소와 민방위교육 효과제고를 위하여 관내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확보하고자 함.

I. 方針

가. 관내소재 교육가능 장소현황 파악